

사업 안내서

2020. 10.

I. 사업 개요

1. 사업명: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,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

2. 사업의 배경 및 목적

○ 배경

-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겪고 있음
-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공익인권적 접근과 고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
- 특히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문제,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와 관련된 공익인권 이슈에 대한 다양한 공익인권활동 및 공익소송,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

○ 목적

-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와 공동선 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익인권활동 및 공익소송,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임

3. 지원내용

(1) 지원대상 프로젝트

○ 주제

-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문제,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와 관련된 공익인권 이슈에 관한 프로젝트

○ 프로젝트 유형

- 공익인권활동, 공익소송, 연구
 - 예) 실태조사, 입법운동,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기획소송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소송, 법·제도 개선 연구, 매뉴얼 제작, 코로나 19 감염병 관련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등

○ 프로젝트 기간

순번	유형	기간
1	공익인권활동	2021년 7월 이전에 완료되는 프로젝트
2	공익소송	2021년 1월까지 제소되는 사건
3	연구	2021년 3월 이전에 완성되는 연구

※ 다만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

(2) 지원 내용

- 1개 프로젝트당 300만원 ~ 1,000만원의 범위에서 사업 예산 지원(전부 혹은 일부 지원), 단 지원금액은 선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- 총 지원규모는 5,000만원
- 총 1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나 지원사업 숫자는 선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II.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, 지원협약 체결

1. 신청 대상

-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, 권리옹호단체, 법학교수, 법학전문대학원 학생
- 개인 또는 단체 신청 가능 (개인 및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도 신청 가능)
- 비법인사단 및 임의단체도 신청 가능
- 지원이 불가능한 단체: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, 종교단체 및 종교시설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

2. 신청 일정 및 방법, 제출서류

(1) 신청기간

- 2020. 10. 5. ~ 2020. 11. 4.

(2) 신청 방법

- 사단법인 두루 홈페이지(<http://duroo.org/>) 공지사항에서 '신청서' 양식 다운로드 후 내용을 기재하여 이메일(duroo@jipyong.com) 접수
- 관련 문의: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변호사, 강정은변호사(02-6200-1880, 이메일: duroo@jipyong.com)

(3) 제출 서류

- 신청서 1부
 - 신청서 및 첨부서류(단체 소개서, 사업계획서, 단체등록증 등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)
- 구체적인 양식은 사단법인 두루 홈페이지(<http://duroo.org/>) 공지사항에서 '신청서' 양식 참조
- ※ 제출받은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

(4) 신청서의 효력

- 신청서의 내용은 지평/두루와의 협의 하에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, 협약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봄
- 신청서 기재 내용과 협약 체결 전 지평/두루의 요청에 따라 수정·보완·변경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이에 우선함
- 지평/두루는 협약 체결 전까지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3. 지원대상 선정

(1) 지원사업 선발 기준

- 공익·인권성 및 사회기여도
- 지원자/단체의 역량 및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
- 재정지원 필요성
- 지원금 사용계획의 합리성 및 명확성

(2) 심사 주체 및 심사 기간

-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를 심사
- 심사 기간: 2020. 11. 5. ~ 2020. 11. 18.
- 필요시,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(3) 선정결과 통보

- 2020. 11. 18. 통보 예정
-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의 방법으로 통보 예정

4. 지원협약 체결

- 지원대상 단체/개인과 법무법인(유한) 지평, 사단법인 두루 삼자간 지원협약 체결
-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예산 및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지원협약을 체결할 때 지원금액을 확정함
-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지원협약을 체결할 때 프로젝트 수행기한을 확정함
- 2020. 11. 하순경 지원협약식 개최 예정
 - 일시,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
 -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

Ⅲ. 사업 진행 관련 일반사항

1. 일반사항

-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, 지원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
- 동일 사업에 대해서 외부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2. 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, 사용 내역 보고

(1) 지원금의 지급

○ 지원금은 2회로 분할하여 지급

- 지원협약 체결 직후 선금을 교부하고, 사업종료 후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(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음)

(2) 지원금의 사용

○ 지원금은 아래의 예시에 따라 사업비, 인건비, 관리운영비로 사용 가능

구분	활동사업 지원	공익소송 지원	연구사업 지원
사업비	장소섭외비, 홍보비, 교재비, 강사료, 회의참가비, 물품구입비, 교통비 등	인지대 및 송달료, 자료조사비, 교통비 등	자료조사비, 보고서 제작비, 인쇄비, 연구진 연구비, 회의참가비, 교통비 등
인건비	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인건비 등		
관리운영비	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리운영비		

○ 제안서에는 지원금사용 계획이 위의 예시에 따라 기재되어야 하며, 지원협약 체결 단계에서 지원금액 및 지원금 사용계획을 확정함

(3) 지원금의 사용 내역 보고

○ 본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개인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프로젝트 수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

3.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점검 및 프로젝트 수행 결과보고, 프로젝트 수행 결과발표회

(1)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점검

○ 필요시,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및 계획, 지원금의 집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(2020년 연말 예정)

(2) 프로젝트 수행 결과보고

○ 본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개인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프로젝트 수행기간의 종료일까지 프로젝트 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3쪽 이내의 결과보고서 양식을 추후 공지할 예정임
- 연구, 매뉴얼 제작, 실태조사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결과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소송의 경우에는 소장 등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(3) 프로젝트 수행 결과발표회

- 2021. 8. 중으로 개최 예정
-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

끝.